

檢 討 報 告 書

1.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

教育社會委員會 專門委員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 검토보고

1998. 11. 6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안 자 : 충청북도지사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 안 : 1998년 10월 27일 제출
- 회 부 : 1998년 10월 27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 “설치”에 관한 사항이 충청북도 행정조직에관한조례로 흡수·통합되면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“운영”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 (안 제1조)
- 각종 검사·시험의뢰시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 징수방법, 성적서 교부방법 등 명시 (안 제2조 내지 제4조)
-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난번 조직개편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및운영조례중 “설치”에 관한 사항이 충청북도 행정조직에관한 조례에 흡수·통합되면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“운영”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